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열람 안내

- ◆ 산정특례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질환정보로 유선을 통한 등록정보 안내가 불가하오니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 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특례 자격확인 |

- ◆ 경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 산정특례 ⇨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확인"

※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의 경우 상병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병코드 및 세부 특정기호 없이 'V'만 표시 됨

| 희귀/중증난치 청구안내 |

- ◆ 중증난치 산정특례 대상자가 등록된 질환의 상병코드와 관계없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상병이 산정특례 중증난치 질환인 경우, 해당 상병의 V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희귀질환 동일, 청구를 위한 등록상병 정보 불필요)

예) 중증 보통건선(L40.00, V280)으로 등록된 중증난치 산정특례 대상자가 파킨슨병(G20, V124)으로 진료받은 경우, 파킨슨병에 해당되는 특정기호(V124)와 수진자의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

※ 희귀 산정특례 대상자(산정특례 등록번호 21~): 희귀질환 적용
 중증난치 산정특례 대상자(산정특례 등록번호 23~): 중증난치질환 적용
 희귀난치 산정특례 대상자(산정특례 등록번호 05~):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모두 적용가능

- ◆ 공단에서는 별도의 산정특례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지사 방문 및 온라인 통한 등록정보 열람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사 방문 본인(대리인) 열람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필요

공통	개인정보열람요구서 1부
본인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①~③}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치매환자 등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 발행)로 후견인 확인
대리인 (가족, 제3자)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자에게 위임 사실여부를 유선 또는 출장으로 확인

온라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본인의 등록내역 조회 가능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전체메뉴(화면아래) → 민원여기요 → 조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